

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8-19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8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청년배당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, 현행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「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」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제명 「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」 를 「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」 로 변경함(안 제명)
- 청년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명칭 및 목적을 변경함(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)
-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생활거주지를 다른 시·도로 이전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(안 제4조)
-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 정보 공동이용 근거 규정을 마련함(안 제6조제2항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붙임4

※ 첨부 : 비용추계서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기간 : 2019. 7. 13. ~ 7. 23.(1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5
- 방침결정문 : 붙임6

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” 를 “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” 로 한다.

제1조 중 “청년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” 를 “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” 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청년배당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” 을 “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” 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청년배당” 을 “청년기본소득” 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지급대상)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.

1.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
2.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,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
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청년배당” 을 각각 “청년기본소득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“청년배당” 을 “청년기본소득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주민등록초본
2. 위임장(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
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“청년배당” 을 각각 “청년기본소득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만 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소관 실·과		정책기획관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정책기획관 신 항 식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인구청년정책팀장 이 경 영
	담 당 자 성명·전화	황 태 인 (행정 3908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	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<u>청년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"<u>청년배당</u>"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.</p> <p>3. (생 략)</p> <p>제3조(시장의 책무) 안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<u>청년배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4조(지급대상) ① <u>청년배당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으로 한다. 다만,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한정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의 대상 중에서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한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5조(지급액 및 지급방법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<u>청년배당 지급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분기마다 지역화폐로 지급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<u>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"<u>청년기본소득</u>"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----- --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시장의 책무) ----- -----<u>청년기본소득</u>----- -----.</p> <p>제4조(지급대상) <u>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.</u></p> <p>1. <u>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</u></p> <p>2. <u>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,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</u></p> <p>제5조(지급액 및 지급방법) ① ----- ----- <u>청년기본소득</u> 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	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
<p>② <u>청년배당</u>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짜에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지급신청) ① <u>청년배당</u>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, 부양의무자,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,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제7조(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청년배당</u>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<u>청년배당</u>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.</p>	<p>② <u>청년기본소득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6조(지급신청) ① <u>청년기본소득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주민등록초본</p> <p>2. 위임장(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7조(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청년기본소득</u>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청년기본소득</u>-----</p> <p>-----</p>